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난위기 발생 시 군의 동원 범위 제한〉
■ 이언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910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서기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언주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11.
3. 회부연월일 : 2024. 9.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책무와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9조제1항에 의하여 각종 재난 상황 시 투입되어 대민지원 활동을 하고 있음.

군의 기본임부는 안보위기로부터 국민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국가적 재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군이 동원되는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으나, 채해병 순직 사건 등을 비롯하여 진정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동원된 군인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군이 재난위기 상황의 대처를 위하여 동원되어야 하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함.

이에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군인의 경우 국가시책사업, 공공사업,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 등에는 동원

되지 아니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단서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군에 대한 동원명령 시 국가시책사업, 공공사업 등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도록 규정하여 동원 사유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39조).

현행	개정안
제39조(동원명령 등) ① (생략)	제39조(동원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 ----- ----- . 다만, 군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지원 요청에는 따르는 아니 된다.
<신설>	1.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시책사업
<신설>	2.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추진하는 공공사업
<신설>	3. 사회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중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
<신설>	4. 개인(민간인)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국가시책에 부합하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신설>	5. 국민 편익증진 및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

현행법은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민방위대의 동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 및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요청,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청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원 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¹⁾를 두고 있음.

개정안은 군에 대한 동원 요청의 내용이 ①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시책사업, ②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추진하는 공공사업, ③ 사회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중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 ④ 개인(민간인)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국가시책에 부합하거나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⑤ 국민 편익증진 및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인 경우 그에 따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최근 채상병 순직사건과 같이 재난상황에 동원됨으로 인해 군인이 희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의 재난위기 상황 극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지 않은 경우 군에 대해서는 동원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군 동원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 및 재난관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동원명령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민방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2.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 또는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3. 동원 가능한 재난관리자원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청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현행법은 동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재난상황에 해당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바,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에 대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군을 동원해서라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또한, 민방위대의 동원, 관계직원의 출동,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등과는 다르게 군부대의 지원에 관하여는 ‘동원 가능한 재난관리자원 등이 부족한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의 동원은 보충적 역할에 국한됨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행정안전부는 재난 피해는 형태나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고 어느 곳에서나 발생가능한 특수성이 있어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개정안과 같이 군부대 지원행위 금지 사유를 광범위하게 설정할 경우 실질적으로 재난상황 발생 시 군부대 지원을 받기 어렵게 되어 재난 피해의 최소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9